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740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2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74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19.
- (3) 회 부 일 : 2024. 12.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몰을 이용한 화장품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되고 있음.

반면,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 위해정보 게시,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의 지정,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유통단계부터 위해화장품 반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직접구매 화장품”을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 직접구매 화장품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검사,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 신설).
- 직접구매 화장품의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관련 자료나 정보를 목적 외로 조화·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u>13. “직접구매 화장품”이란 개인이 자</u>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생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化粧품을 말한다.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化粧품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

제28조의3(직접구매化粧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化粧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化粧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직접구매化粧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化粧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신설> ② (생략)	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화장품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화장품의 구매·사용실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6조(벌칙)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8조의4제3항을 위반한 자 ②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나. 검토의견

□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화장품의 직접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데¹⁾, 해외에서 제조되어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화장품은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화장품에 비해 품질 검증이나 안전성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식약처는 현행법 제18조제2항²⁾에 따라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수거·검사를 통해 품질과 안전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면서,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거나 관세청에 통관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있음.

□ 다만,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은 국내에서 생산·제조되어 유통되는 화장품과 공급구조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화장품을 별도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바,

개정안은 “직접구매 화장품”을 정의하고 해당 화장품에 대한 검사,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됨.

1) <화장품 해외직구(전자상거래 수입) 현황> - 출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 173만건, (‘21) 336만건, (‘22) 286만건, (‘23) 232만건, (‘24) 307만건

2) 「화장품법」

제18조(보고와 검사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품질 또는 안전기준, 포장 등의 기재·표시 사항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분량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

※ (‘24년) 식약처, 지자체 등 515품목 검사, (‘25년) 식약처 1,080품목 검사 예정

□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 식품등”의 안전관리 관련 규정과 유사한 체계로 발의되었으므로, 이하 조문별로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정의 및 공표) 개정안에서 “직접구매 화장품”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식약처장이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직접구매 화장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해당 정의에는 “해외”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개정안
정의	제2조(정의) 7. “ <u>직접구매 해외식품등</u> ”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13. “ <u>직접구매 화장품</u> ”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정보 공표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u>인터넷 홈페이지에</u> 게시할 수 있다.	제23조의2(위해化粧품의 공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u>공표할 수 있다</u> .

□ (검사 및 정보 제공)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현행법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³⁾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 제15조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이고, 부적합한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개정안
검사 및 정보 제공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	제28조의3(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

3)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된 화장품
-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
-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 코발소 빨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 용기나 포장에 불당하여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을 위조·변조한 화장품
-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른 검사 결과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 식품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른 검사 결과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

- (실태조사 및 벌칙)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⁴⁾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화장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태조사를 통해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관련 자료나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소비자의 직접구매 화장품 구매·사용실태 등 실태조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법정형으로는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정보의 내용 및 성격, 다른 입법례⁵⁾ 등을 참

4)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하여 법정형이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개정안
실태 조사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구매·사용실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식품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4(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화장품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화장품의 구매·사용실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이하 각 호 생략)

제127조(벌칙) ③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제16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81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 도입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인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8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검역법」

제38조(비밀누설 금지) 검역조사 등 검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 제12조의3에 따른 항공기 검역조사, 제12조의4에 따른 선박 검역조사, 제12조의5에 따른 육로에서의 검역조사,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 예약자료 제공 요청 및 제29조의5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u>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u>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7의2. <u>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정보를 조회·사용하거나 제공·누설한 자</u>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u>제28조의4제3항을 위반한 자</u>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다만,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총리령 등 하위 규정 정비를 위해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할 필요

문 의 처

02)6788-5504